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가단1028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1. 유한회사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송성현

변 론 종 결 2021. 11. 24.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 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사이에 2017. 9. 19.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은 취소한다 . 피고 C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②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D 사이에 이루어진 면제는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① 피고 C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 금원을 지급하라. ②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8, 12 내지 15, 21, 2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는 2016. 1. D에 입사하여 회계 담당 전무로 일하였다.
- 2) 피고 C는 D의 대표이사 E의 장남인 F이 2017. 9. 19. 수산물 및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의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 3) 피고 B은 1998. 7. 4. 어패류 중개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D의 대표이사 E의 차남인 G가 2014. 8. 6.부터 사내이사로, 2017. 12. 5.부터는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7. 10. 22. D과 E(대표이사), F(사내이사)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201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이들에게 2016. 3. 25.부터 2017. 10. 2. 사이에 다액의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9. D에 대하여1) 원고에게 171,657,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8. 23. 확정되었다(이하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따라 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D의 간이회생절차

1) D은 2019. 1. 8. 서울회생법원 2019간회합100006호로 간이회생을 신청하여 2019. 1. 31. D의 대표이사였던 E을 관리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원고가 2019. 3. 5. 서울고등법원 2019라20269호로 즉시항고하였으나, 2019. 7. 17. 그 즉시항고가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가 2019. 7. 31. 재차 대법원 2019마6081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9. 10. 18. 그 재항고마저 기각되었다.2) 2) 원고는 위 간이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신고하였고, 관리인은 이를 시인하였다[합계 178,500,605원(= 원금 171,657,808원 + 개시 전 이자 6,842,797원 +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개시 후 이자)].

3) 서울회생법원은 2019. 7. 17. 관리인 E이 제출한 회생채무자 D의 관리인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그 변제계획에 따르면, 회생채권자의 채권 중 원금 및 간이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이자의 67%를 출자전환하고 33%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게 되어, 관리인이 시인한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채권액 중 출자전환된 부분(119,595,405원)을 제외한 현금변제 대상액은 58,905,200원(=원금 56,647,077원 + 개시 전 이자 2,258,123원)으로 확정되었다.

4)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은 위와 같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현금변제 대상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다.

5) D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는 2020. 10. 29. 종결되어 2020. 10. 30.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형사고소

1) 2017. 9. 19. 피고 C가 설립되자 D은 그 무렵 피고 C에 D의 외상매출채권과 외상매출채무를 이전해주었다.

2) 이에 원고는 2019. 8. 5.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2019년 형제31315호로 D과 그 대표이사인 E, 피고 C와 그 대표이사이자 E의 아들인 F을 강제집행면탈, 횡령, 배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사기회생)으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위 고소장(갑 제13호증)에는 D과 그 대표자인 E이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채권(대여금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아들 F을 통하여 피고 C를 설립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의 수십 억 원 상당 외상매출채권을 피고 C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D의 재산을 은닉하고 D에 대하여 간이회생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가 위 고소 이후 수사기관에 추가로 제출한 진술서(갑 제14호증의 2)에는 D과 대표이사인 E이 그 아들인 G가 운영하는 피고 B에 대하여 보유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대금 수수 없이 피고 B으로부터 위 외상매출채권 4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장부를 조작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0. 4. 13. ① D과 피고 C의 강제집행면탈,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사기회생)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이 없는데 관련 형벌규정에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이 없어 고소사실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② E, F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업무상횡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사기회생)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4)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검찰청 2020고불항 제4592호로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0. 6. 18. E, F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재기수사를 명하고, D, 피고 C에 대한 피의사실과 E, F에 대한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한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D은, 한편으로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채권(대여금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E을 통하여 그 아들인 F과 통모하여 2017. 9. 19. 피고 C를 설립함과 동시에 피고 C에 D의 다수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100,000,000원을 이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또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하는 방법으로 D의 자산을 은닉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회수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다른 한편으로 대표이사 E의 아들인 G가 운영하는 피고 B와 거래하면서 발생한 100,000,000원 상당의 매출채권 중 40,000,000원 상당에 대한 피고 B의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이하 '이 사건 채무면제'라고 한다)하였다.

D의 이 사건 채권양도와 이 사건 채무면제는 모두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① 주위적 청구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D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과 D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채무면제의 각 취소와 가액배상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각 청구취지 기재 해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② 예비적 청구로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C에 대하여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피고 B에 대하여 4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주위적 청구)는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생절차에 있어서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생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와 별도로 개별 회생채권자가 민사소송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반면, 회생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관리인의 부인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나) 원고가 2016. 3. 25.부터 2017. 10. 2. 사이에 D에 한 금원 대여와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이 D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2018. 7. 19. 선고되어 2018. 8. 23. 확정된 사실, 한편 D이 2017. 9. 19. 설립된 피고 C에 D의 외상매출채권과 외상매출채무를 이전해 준 사실(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후 D이 2019. 1. 8. 간이회생을 신청하여 2019. 1. 31. D의 대표이사 E을 회생채무자 D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19. 7. 17. 관리인의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2020. 10. 29. 간이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한편으로 위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원고의 2019. 3. 5.자 항고 및 2019. 7. 31.자 재항고가 모두 기각된 사실, 그 후 원고가 2019. 8. 5. D, 피고 C와 E, F을 형사고소하였으나, 2019. 8. 5. 검사가 위 피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형사고소 과정에서 작성한 고소장이나 진술서에 D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D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채무면제와 직접 관련된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21. 1. 26.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포함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위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형사고소와 이 사건 소송 등에서 원고가 한 주장의 전체적인 취지는 대부분 제2항의 ‘원고의 주장’과 같고, 다만 당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일부 표현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한 점, ② D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E(D의 대표이사이다)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으로 D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D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채무면제에 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권에 해당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간이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 과정에서 간이회생신청의 상당성, 관리인이 한 업무수행의 정당성을 다투었으나 원고의 해당 주장이 배척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나)항에서 살펴본 사실 또는 사정을 위 가)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D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과 D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채무면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D에 대한 간이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진 2019. 1. 31. 이후부터 그 간이회생절차가 종료한 2020. 10. 29.까지는 회생채무자 D의 관리인인 E만이 사해행위의 취소권에 해당하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실질적인 행위주체인 E은 개인으로서는 해당 행위 즉시, 늦어도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으로서는 그가 관리인으로 선정된 2019. 1. 31.경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D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음에도 관리인이 그 각 해당시점으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 내에 부인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관리인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D에 대하여 2019. 1. 31. 개시된 간이회생절차가 2020. 10. 29. 종료하여 관리인의 부인권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D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민사소송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시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제척기간을 둔 입법취지에 비추어 D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관련한 제척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볼 수도 없다.3) 이렇게 본다면, 원고는 빠르면 원고가 서울회생법원의 2019. 1. 31.자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제2항의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항고를 제기한 2019. 3. 5.경 무렵에, 늦어도 같은 취지로 D과 그 대표이사 E, 피고 C와 그 대표이사 F을 형사고소한 2019. 8. 5. 무렵에는 D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과 D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채무면제가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채무자인 D이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그와 같은 사해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 원고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D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과 D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채무면제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다고 봄이 상당한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2021. 1. 27.에서야 제기하였음은 계산상

분명하다.

나.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주위적 청구)의 소는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주장은 이유 있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만으로 또는 이에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7, 9 내지 11, 16, 22, 2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D 또는 그 대표이사인 E이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C 측과 통모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피고 C에 D의 100,000,000원 상당 외상매출채권을 불법적으로 이전하거나, 피고 B의 D에 대한 4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D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의 즉시항고 및 재항고, 형사고소 사건 등에서 모두 배척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순형

- 1) E, F 개인에 대하여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은 생략하였다.
- 2) 즉시항고와 재항고 부분은 법원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였다.
- 3) 한편 원고는, 회생채무자 D의 관리인이 의도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해당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자는 민사소송으로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에 따를 경우에도 D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의 진행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